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58호 2019. 2. 1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8호 삼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37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138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143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18호

삼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 성남동 2번지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④(성남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삼척시장

1. 계획취지: 성남공원 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증·개축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
2. 위 치: 삼척시 성남동 2번지 일원
3. 면 적: 삼척문화예술회관(교양시설)
 - 시설면적 = 15,098.43㎡ → 15,198.43㎡(증 100.00㎡)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별도 게재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별도 게재
6. 기타 고시 관련 사항은 삼척시청 공원녹지과(☎ 033-570-4012) 및 도시과(☎ 033-570-3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시 제 2019 - 1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14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494	폐지	20190215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560-2, 560-3, 560-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14	20190215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동막리 마을명)사용	
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6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456-116	2019021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4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482	2019021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43-5, 1144-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490	2019021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42, 1143-6, 1144-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492	2019021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7	강원도 삼척시 마평동 65, 산92-2, 산92-3	강원도 삼척시 회강2길 58 (마평동)	20190215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회강길분기)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주소		도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계	7 건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94	폐지	20190215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560-2, 560-3, 560-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14	20190215		20090626	지역명(동막리마을명)사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6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456-116	20190215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4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길 482	20190215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43-5, 1144-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길 490	20190215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42, 1143-6, 1144-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길 492	20190215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미평동 65, 신92-2, 산 92-3	강원도 삼척시 회강2길 68 (미평동)	20190215		20090626	일련번호 방식 활용(회강길분기)	

삼척시 공고 제137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삼척시장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도계주민의 복리증진과 외부 방문객 연계 유치 강화를 위해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입장료 일정금액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상생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체험료 하향 조정과 함께 체험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 다. 필요없는 중복문구를 삭제

2. 주요내용

- 가. 입장료 면제기준 추가(제11조)
 - 8.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나.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일부조정(제10조 별표 1, 별표 2)
 - 입장료 일부금액을 삼척사랑상품권 환급 내용추가(제10조 제1항 중 별표 1)
 - 체험료 및 체험목록 조정(제 10조 제2항 중 별표 2)
- 다. 필요없는 중복문구 삭제 [별표 1]
 - 제11조 (입장료의 면제)와 중복되는 [별표 1] ※ 입장료 면제기준 삭제
 - [별표 1] ※ 대상기준에서 성인부분 경로대상자 65세 이상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자원개발과(우 25914)
 - 연락처 :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시설운영팀 (033-570-4207)
 - F A X : 033- 570-3187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 설>	제11조(입장료의 면제)----- ----- ----- 1. ~ 7. (현행과 같음) 8.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별지]

[별표 1]

입장료의 한도

○ 도계유리나라			
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8,000	6,000	4,000
단체	5,000	4,000	3,000
○ 피노키오나라			
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3,000	2,000	1,000
단체	2,000	1,000	500
○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통합권)			
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10,000	7,000	5,000
단체	6,000	5,000	3,000

※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원)

도계유리나라	성인	개인	3,000	청소년	개인	2,000	어린이	개인	1,000
		단체	2,000	군인	단체	1,000		단체	1,000
피노키오나라	성인	개인	1,000	청소년	개인	-	어린이	개인	-
		단체	-	군인	단체	-		단체	-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통합권)	성인	개인	4,000	청소년	개인	3,000	어린이	개인	2,000
		단체	2,000	군인	단체	2,000		단체	1,000

※ 대상 기준

- 성인 : 20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인 :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 단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

※ 입장료 감면기준

1. 입장료의 50%감면(신분증 및 감면 증빙 서류 제시, 중복 감면 적용 불가)
 -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 유리공예 체험료

(단위 : 원)

종 류	체험 내용	개인 체험비	단체 체험비
램프워킹 체험	목걸이 만들기	13,000	10,000
	반지 만들기	13,000	10,000
	키홀더 만들기	13,000	10,000
	티 스틱 만들기	13,000	10,000
블로잉 체험	컵 만들기	28,000	23,000
	화병 만들기	28,000	23,000
	크리스마스 불 만들기	18,000	13,000
	램프 만들기	18,000	13,000
글라스페인팅 체험	유리컵 색깔 입히기	13,000	12,000
샌딩 체험	유리컵 문양꾸미기	13,000	13,000
유리 팔찌 만들기	유리구슬 팔찌 만들기	단체체험만 가능	성인, 청소년 6,000
			유치원, 초등학교 5,000

※재료비는 체험비에 포함되며 체험내용과 체험비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목공예 체험료

(단위 : 원)

종 류	체험료	소요시간	비고
편지꽃이	11,000		
우체통	13,000		
도마	8,000		
손잡이나무박스 (반제품구입)	10,000		
핸드 우드트레이	11,000		
필통	10,000		
연필꽃이	6,000		
책꽂이	9,000		
새집	12,000		
가방홀더	3,500		
곰돌이시계	13,000		
독서대(재단)	14,000		채색작업시 3,000원 추가
접이식 테이블	24,000		채색작업시 5,000원 추가
의자	35,000		채색작업시 5,000원 추가
좌식테이블 (우드버닝체험)	37,000		
2단 수납장	55,000		채색작업시 5,000원 추가

※재료비는 체험비에 포함되며 체험내용과 체험비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공고 제2019-138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삼척시장

- 열람목적
 -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열람기간 : 2019. 2. 15. ~ 2019. 2. 28.(14일간)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열람개요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도계 흥전 육교의 재해위험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용생략” (열람장소 비치)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 나. 제출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다.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 기타 사항
 -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9 - 143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 생활적폐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할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시행에 따라 우리시 행동강령에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추가(안 제5조 제1항)
 - 금전거래, 지속적인 친분관계 등을 신고대상에 추가
- 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 추가 및 사후 신고 기간 규정 (안 제5조의6 제1항 ~ 제2항)
 - (제1항) 직부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향응 행위 추가
 - (제2항) 사후 신고 기한 규정

- 다.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의 구체적 규정 및 금지(안 제13조의3)
 - 민원업무, 조직 내, 조직이외 목적 등에 따른 갑질 유형 규정
- 라.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 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독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 (안 제14조의2)
- 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내용 구체 (안 제22조 제3항 ~ 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 570-3707 ○ FAX : (033) 570-3131
- 전자우편 : psw20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실을”을 “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공무원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8.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의”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5조의6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서식에 따르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4조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통지”를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을 “수립하고, 매년”으로, “교육을 하여야”를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4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 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 ----- <u>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u>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공무원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8.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신설>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생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 ----- ----- <u>다음 각 호의</u> ----- <u>경우</u> ----- ----- ----- ----- -----
<신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신설>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신설>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신설>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서식에 따르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⑤
(생략)
<신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독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4조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한 부당행위-----
---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 ① -----
----- 수립하고, 매 년 ---
-----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항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정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